

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18서식] <개정 2024. 5. 22.>

전입신고, 주소 변경 또는 정정, 세대주 변경,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,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[]신규 []변경 []해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 번호	접수일	처리 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주소 (우)		
	휴대전화번호		
신청 대상 건물·시설 주소지	주소 (우)	※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합니다.	
신청 서비스	전입신고 사실	[]휴대전화 문자 전송	
	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	[]휴대전화 문자 전송	
	세대주 변경 사실	[]휴대전화 문자 전송	
	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사실	[]휴대전화 문자 전송	
	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사실	[]휴대전화 문자 전송	[]우편

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, 제20조제3항,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,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, 세대주 변경 사실,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사실이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([]신규, []변경, []해지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첨부서류	내용
	1. 세대주(전입신고·세대주 변경의 경우):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	2. 소유자(전입신고의 경우): 건물 등기부 등본, 등기필정보,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	3. 임대인(전입신고의 경우): 임대차 계약서,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유의 사항

-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, 건물·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.
-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을 신청하거나, 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.
-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(기관)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.
- 신청 대상 건물·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.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모든 통보 서비스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본인이 신청·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전입신고, 세대주 변경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